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농업기술센터(농업정책과)

제정 2019 · 12 · 27 조례 제157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「농업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 발전 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- 2. "생산자 단체"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- 3. "주요 농산물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.
- 4. "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"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.
 - 가. 시 중심 조직 :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, 지역농협, 농업법인 등의 조직,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"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"으로 합의된 조직
 - 나. 품목중심 조직 : 경기도내 3개 시·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동일 품목을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"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"으로 합의된 조직
- 5. "기준가격"이란 당해 연도 주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.
- 6. "시장가격"이란 당해 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'상품(上品)'기준 평균가 격을 말한다.
- 7. "차액"이란 '시장가격'이 '기준가격'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8. "계통출하"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4호의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출하·판매하는 것을 말한다.
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시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) 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,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 - 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 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,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시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1.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(이하 "차액지 원 사업"이라 한다)
 - 2.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3.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, 공동출하, 조직화를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 운영
 - 4.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)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의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,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제5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고,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'기준가격'과'시장가격'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신청 및 조사)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이천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.

- 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"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 - 1.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
 - 2. 주요 농산물 대상 결정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, 농업정책과장, 기술보급과장, 농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2. 농업인 단체 관계자
 - 3.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
 - 4. 이천농협중앙회, 지역농협 소속 관계자
 - 5.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
 - 6. 그 밖에 농업·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해서 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.
 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

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대행한다.

- 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
 - 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 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